

4

사회보험 재정추계 <<

제1절 국민연금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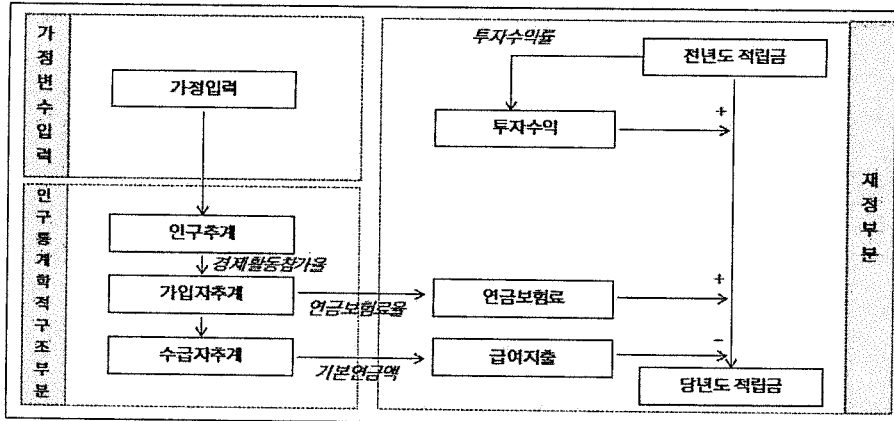
1.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법

가.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의 특징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는 국가장기재정운용계획(기재부)의 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추이를 2060년까지 전망하고, 관련기관에서 사용할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공통변수를 제공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장기전망협의회에서 제공받은 공통변수를 검토하여 2060년까지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적용하고, 2060년 이후는 별도 검토 후 가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그림 4-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의 구조



8)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2차회의 발표자료 인용하여 재정리

(1) 국민연금 가입자추계

가입자추계는 인구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입자추계방법은 연도별 인구수에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 가입률을 곱하여 전체 가입자를 산출하고, 전체 가입자에 지역가입률을 곱하여 지역가입자를 산출한다. 산출한 전체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를 차감하면 사업장가입자 수가 된다.

가입기간별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대기자⁹⁾로 구분하고, 각 가입종별 간의 가입자의 이동행태를 추적하여 가입종별 간의 이동률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상태의 변화에 따라 가입기간의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2) 국민연금 수급자추계

수급자추계를 위해서는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분류된 가입자로부터 각 연금의 조건과 발생률을 적용하여 매년 발생하는 신규수급자를 산출하고, 전년도에 이어 계속 연금을 수급하는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총 수급자에 사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① 노령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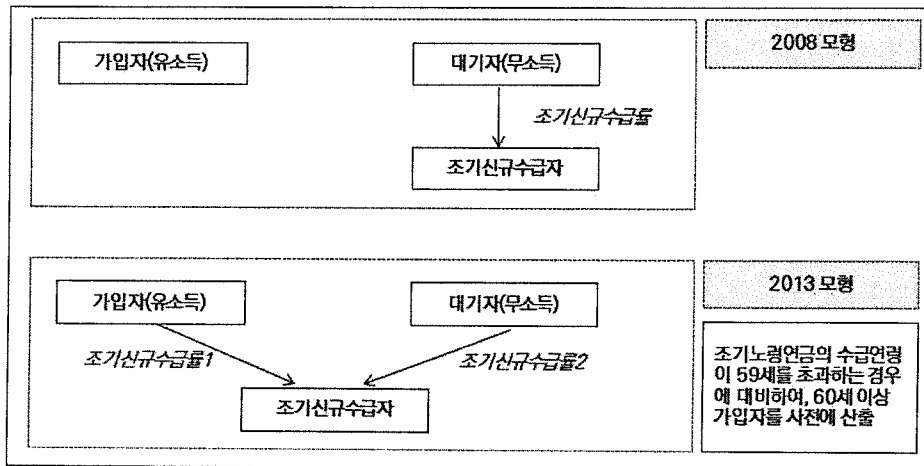
노령연금에서는 가입기간별 가입자 및 대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신규수급자가 될 수 있다. 수급조건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이며, 신규수급자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속수급자의 경우는 전년도 총수급자에 생존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속수급자 급여액은 전년도 평균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기신규수급률을 적용하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08년 재정추계모형과 2013년의 모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9) 대기자란 과거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함.

2008년 모형에서는 조기신규수급률을 연령과 가입기간조건을 만족하는 소득이 없는 대상자 중에서 조기신규수급자 비율로 정의하였으나, 2013년 모형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5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가입자를 사전에 산출하여 가입자와 대기자 각각에 대하여 조기신규수급률을 산정하였다.

[그림 4-2] 조기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로 구분하는데, 신규수급자는 가입자의 규모와 구성 및 장애발생률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며,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장애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사망 등으로 수급이 종료된 경우를 수급자수에서 차감하여 전년도수급자 중 생존한 사람에 한하며,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은 전년도계속수급자평균급여액에 물가상승률로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자중 가입기간 증가자를 산출함으로써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장애연금의 선발급여선택자와 노령연금의 후발급여액을 별도로 산출하며, 선발급여선택자 및 후발급여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에서 차감한다.